

학회 영수증 등 증명서류 발급안내

“국세청과 거래 회계사무소의 지도에 따라, 아래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
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관련 증명서류로 대체하오니, 양지바랍니다.”

- 한국정보과학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.
-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가목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학회가 발행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는 적격 증빙으로 유효합니다.

법인세법 전문보기 <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250&efYd=20160125#0000>

제116조(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)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**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

2. 현금영수증
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

4. 제12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
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·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4.1.1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인세법 시행령 전문보기 <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1710&efYd=20160311#0000>

제158조(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)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1. **법인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.**

가. 비영리법인(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)
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다.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(「소득세법」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·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)

라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